

4.4.6 학술상규정

제정 1999. 11.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 교원 중에서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이 우수한 교원에게 상을 수여하여 연구의욕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상의 명칭은 “초당대학교 학술상”(약칭 “초당 학술상”)이라 한다.

제3조(자격) 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본 대학교 전임 교원으로서 평가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연구비를 수혜받고 정한 기일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2. 총장 또는 이사장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자로서 경고처분 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조(실적) 본 학술상의 평가는 다음의 실적에 의하여 심의 평가한다.

1.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실적
2. 국내외 연구과제 수탁실적
3. 각종 학술대회 참가활동 및 수상실적
4. 저서, 창작활동 및 기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제5조(평가) 최근 2년간의 연구 및 학술 부문 실적을 합산하되, 본교 「교원 업적평가」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정한다.

1. 본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최근 2년간 연구·학술활동 부문의 업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학술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평가기간 동안 300%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및 본 대학교의 명예를 향상시키는데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연구·학술활동 부문의 업적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전임 교원은 “초당대 최우수 연구교수”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수는 각각 “○○계 우수 연구교수”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4. 초당대 최우수 연구교수에게는 이사장 상을, 각 계열별 우수 연구교수에게는 총장 상을 수여한다.
5. 우수 연구교수로 선정된 전임교원은 향후 2년 동안 초당 학술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상 시기) 초당 학술상은 매년 개교기념일 행사 때 표창한다.

제8조(대우) ① 우수 연구교수에 선정된 자는 인사고과와 교내 연구비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최우수 및 각 계열별 우수연구교수에게는 상장과 상품 및 연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